#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시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 관련 2332 제안년월일 : 2021년 4월 22일

제 안 자:기획경제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 서울시경찰청장과의 합의를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거나, 위원회 회의와 심의·의결에 대한 통보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함.

#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서울시경찰청장과의 합의로 자치경찰사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, 별표의 자치경찰사무를 변경하는 경우 서울시 경찰청장의 의견 청취를 강행규정으로 수정함(안 제2조).
- 위원장이 시장에게 상임위원을 제청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함(안 제6조제2항).
-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·의결 사항에 대한 통보 등 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을 신설함(안 제8조).
- 회의 참석과 답변 대상자를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함(안 제9조).

-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추가함 (안 제12조).
- 실무협의회 협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(안 제13항제2항).
- 조례의 시행 시점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함(부칙).

#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하여,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②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질 수 있도록 미리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.
  - ③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광역시·특별 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안 제3조 중 "시장"을 "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"으로, "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"를 "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"를 "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 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"로 한다.
- 안 제5조제1항 중 "경우"를 "경우에는"으로, "사람에게 자격요 건"을 "사람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"으로 한다.

안 제6조제2항 중 "상임위원을 선정한다."를 "상임위원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."로 한다.

###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7조(의안의 제안 및 상정)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.

- ② 위원은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안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.
- 안 제8조부터 안 제20조까지를 각각 안 제9조부터 안 제21조까지로 하고,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제8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·개최한다.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·개최한다.
 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③ 위원회는 심의·의결한 사항을 시장과 경찰청장, 서울특별시경 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안 제9조(원안 제8조) 중 "위원장은 안건을"를 "위원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"로, "경우, 관계 공무원 및 경찰관과"를 "경 우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및" 으로 한다.
  - 안 제10조(원안 제9조)제2항 중 "당사자는"을 "해당 안건의 당사자는"으로 한다.
  - 안 제11조(원안 제10조) 중 "위원의 참석·심사수당, 참석비 및 교통비, 식비, 숙박비 등은"을 "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"으로 한다.
  - 안 제12조(원안 제11조)제1항 중 "서울특별시, 경찰청, 서울특별시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"을 "제13조제1항의 사항을 협의하는 실무협의회를"로, 같은 조 제2항 중 "서울특별시경찰청"을 "서 울특별시경찰청, 서울특별시교육청"으로 한다.
  - 안 제13조(원안 제12조)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   - ② 실무협의회 협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경찰청장,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각 관계기관 의 장은 소관 사무 처리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.
  - 안 제18조(원안 제17조)제1항 중 "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

관한 조례」에 따라"를 "법 제35조제2항 및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"로, "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, 처우 등의"를 "후생복지, 처우 등의"로, 같은 조 제2항 중 "직원에게도 필요한 경우"를 "직원에게"로 한다.

- 안 제19조(원안 제18조) 중 "출석·답변"을 "출석하여 답변"으로 한다.
- 안 제20조(원안 제19조)제2항 중 "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규칙 (이하 "위원회규칙"이라 한다)"를 "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 회 세칙(이하 "위원회세칙"이라 한다)"로 한다.
- 안 제21조(원안 제20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1조(위원회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세칙으로 정한다.

-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제2조(생활안전, 교통,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	
무의 범위 등) ① (생략)	사무의 범위 등) ① (원안과 같음)
②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시민의 생활	<삭 제>
안전, 교통편의, 지역경비 등과 관련하여 시	
급히 수행하여야 할 사무로서 서울특별시장	
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	
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	
추가할 수 있다.	
③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(이하 "위원회"	② 서울특별시 <b>자치경찰위원회</b> 는 제1항에 따
<u>라 한다)</u> 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	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
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	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
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질 수 있도록 <u>사</u>	규모로 정해질 수 있도록 <u>미리</u> 서울특별시
<u>전에</u>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의견을 <u>들을 수</u>	경찰청장의 의견을 <u>청취한다.</u>
있다.	
④ <b>위원회는</b>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	③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영 제2조제
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	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
다른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자치	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광역시·특별자치
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	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
하며,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	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
있다.	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제3조(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서울특	제3조(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서울
별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소관	특별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
사무를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<u>시장</u> 소속으로	소관 사무를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</u>
합의제 행정기관인 <u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</u>	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소속으로 합의
<u>회</u> 를 둔다.	제 행정기관인 <u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</u>
	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제5조(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) ① 시장은 법	제5조(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) ① 시장은
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	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
따른 위원 추천권자(이하 이 조에서 "추천권	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(이하 이 조에서 "추
자"라 한다)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	천권자"라 한다)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

제정안	수정안
추천받은 <u>경우</u> 추천권자 또는 추천받은 <u>사람</u>	람을 추천받은 <b>경우에는</b> 추천권자 또는 추천
<u>에게 자격요건</u>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	받은 <u>사람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</u>
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	<u>격요건</u>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
	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② (생략)	② (원안과 같음)
제6조(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) ① (생	제6조(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) ①
략)	(원안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	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
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, 해당 회의	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, 해당 회
에서 시장에게 제청할 <b>상임위원을 선정한다.</b>	의에서 시장에게 제청할 <u>상임위원을 위원회</u>
③ (생략)	<u>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.</u> ③ (원안과 같음)
제7조(의안의 발의 및 상정) ① 시장 <u>과</u> 위원장	제7조(의안의 <u>제안</u> 및 상정) ① 시장 <u>또는</u>
은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<u>범위</u>	세/ <b>-X(크린크 <u>세년</u> 및 88/</b> ① 세종 <u></u>     위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
안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<b>단독으로 발</b>	무 <b>범위에서</b>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<b>제안</b> 할
 <u>의</u> 할 수 있다.	수 있다.
② 위원은 재적위원 3 <u>인</u> 이상의 찬성으로 위	② 위원은 재적위원 3 <u>명</u> 이상의 찬성으로
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<u><b>발의</b></u> 할 수 있다.	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<u>제안</u> 할 수 있다.
③ 위원장은 <u><b>발의된</b></u>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	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안된
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.	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
	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제8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위원장은 법
	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
	회의를 소집·개최한다. 이 경우 정기회
	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·개최한다.
	<u> </u>
	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
	결한다 <u>.</u>
	③ 위원회는 심의·의결한 사항을 시장과
	경찰청장,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통

제정안	수정안
	보하여야 한다.
제 <u>8</u> 조(관계자의 위원회 참석·답변 등) <u>위원장</u>	제 <u>9</u> 조(관계자의 위원회 참석·답변 등) <u>위원</u>
<u>은 안건을</u>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	<u>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</u> 효율적으로 처
하다고 인정되는 <b>경우, 관계 공무원 및 경찰관</b>	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<u>경<b>우에</b></u>
<u>과</u>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여 답	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
변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	<u>과 전문가 및</u>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
수 있다.	참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
	출을 요구할 수 있다.
제 <u>9</u> 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(생략)	제 <u>10</u> 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(원안과 같음)
② <b>당사자는</b>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	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
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・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	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・의결을
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	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
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	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
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	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
참여하지 못한다.	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③ (생략)	③ (원안과 같음)
제 <u>10</u> 조(위원의 수당) <u>위원의 참석·심사수당,</u>	제11조(위원의 수당) <u>위원회 위원의 수당과</u>
<u>참석비 및 교통비, 식비, 숙박비 등은</u> 「지방자	<u>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</u> 「지방자치단
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별표 5 및「서	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별표 5 및「서울
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	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
따른다.	
제 <u>11</u> 조(실무협의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영	제 <u>12</u> 조(실무협의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영
제15조제1항에 따라 <u>서울특별시, 경찰청, 서</u>	제15조제1항에 따라 <u>제13조제1항의 사항을</u>
<b>울특별시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</b> 운영할 수	<b>협의하는 실무협의회를</b> 운영할 수 있다.
있다.  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, 서울특별시 관계부	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, 서울특별시 관계부
서, 경찰청, <b>서울특별시경찰청</b> 등 관계기관의	선 물무합기와는 위전회, 시골목물시 전계구 서, 경찰청, <b>서울특별시경찰청, 서울특별시교</b>
시, 8일8, <u>세월<b>국일시8일8</b></u> 8 전세기단기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.	지, 828, <u>제울국물제공물영, 제울국물제표</u>   <b>육청</b>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
O   C O   O C 4.	<del>작용</del>
③ (생략)	③ (원안과 같음)
제12조(실무협의회 회의) ① 실무협의회는 다	제13조(실무협의회 회의) ① 실무협의회는

제정안	수정안
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	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1.~ 4. (생략)	1.~4. (원안과 같음)
② 실무협의회 <b>협의결과는</b> 경찰청장, 서울특별	② 실무협의회 <b>협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·의</b>
시경찰청장 등 <u>소관 기관장</u> 에게 통보하고 <u>각</u>	<b>결을 거쳐</b> 경찰청장,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
<u>기관의</u> 소관 사무 <u>처리시</u> 반영할 수 있다.	<u>관계기관의 장</u> 에게 통보하고 <u>각 관계기관의</u>
	<u>장은</u> 소관 사무 <u>처리시 이를</u> 반영할 수 있다.
제 <u>13</u> 조~제 <u>16</u> 조 (생략)	제 <u>14</u> 조~제 <u>17</u> 조 (원안과 같음)
제 <u>17</u> 조(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	제 <u>18</u> 조(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
지원)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	지원)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
무원에게 <mark>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</mark>	무원에게 <u>법 제35조제2항 및「서울특별시 공</u>
한 조례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	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
적용받는 <b>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</b>	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
<u>위에서 복지, 처우 등의</u> 지원을 할 수 있다.	는 <u>후생복지, 처우 등의</u> 지원을 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	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
아닌 <b>직원에게도 필요한 경우</b> 제1항에 따른	이 아닌 <u>직원에게</u>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
지원을 할 수 있다.	수 있다.
제 <u>18</u> 조(위원장의 의회 출석·답변) 위원장은	제 <u>19</u> 조(위원장의 의회 출석·답변) 위원장은
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가	「지방자치법」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가
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<u>출석·답변</u>	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<u>출석하여</u>
하여야 한다.	<u><b>답변</b></u> 하여야 한다.
제 <u>19</u> 조(위원회의 감사) ① (생략)	제 <u>20</u> 조(위원회의 감사) ① (원안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	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
절차와 방법 등은 <u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</u>	절차와 방법 등은 <u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</u>
<u>규칙(이하 "위원회규칙"이라 한다)</u> 으로 정한다.	세칙(이하 "위원회세칙"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
제20조( <u>위원회규칙</u> 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	<b>제21조(<u>위원회세칙</u>)</b>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
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<u>위원회</u>	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<u>위원회</u>
<u>규칙</u> 으로 정한다.	<u>세칙</u> 으로 정한다.
부칙	부칙
제1조(시행일) <u>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</u>	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u>시행한다.</u>	

##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과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치경찰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생활안전, 교통,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) ① 「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2항 및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.
  - ②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질 수 있도 록 미리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.
  - ③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 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경찰청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제3조(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위 원회의 소관 사무를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

- 다)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
- 제4조(위원회의 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,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
- 제5조(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)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(이하 이 조에서 "추천권자"라 한다)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권자 또는 추천받은 사람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 게 통보하고 재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제6조(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)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, 해당 회의에서 시장에게 제청할 상임위원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.
- 제7조(의안의 제안 및 상정)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은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안할 수

있다.

-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안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.
- 제8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위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를 소집·개최한다. 이 경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월 1회 이상 소집·개최한다.
 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  - ③ 위원회는 심의·의결한 사항을 시장과 경찰청장,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9조(관계자의 위원회 참석·답변 등)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 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 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경우
  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

이었던 경우

- 5.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위원장이 승인한 경우
-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위원의 수당)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「지 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별표 5 및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12조(실무협의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협의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, 서울특별시 관계부서, 경찰청, 서울특별시경찰청,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.
  -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13조(실무협의회 회의) ①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  - 1.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련된 사항
  - 2. 국가경찰사무·자치경찰사무의 협력·조정
  - 3.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사항
  - 4.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원 간 공동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

- ② 실무협의회 협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경찰청장,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각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 처 리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.
- 제14조(실무협의회 간사) ①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  -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과장이 된다.
- 제15조(실무협의회 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, 회의개최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 여 정한다.
- 제16조(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) ① 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을 둔다.
  - ②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」에 따른다.
  - ③ 제2항의 조직 및 정원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제17조(예산)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·의결하기 전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제18조(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법 제35조제2항 및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,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9조(위원장의 의회 출석·답변) 위원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가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위원회의 감사)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·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세칙(이하 "위원회세칙"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
- 제21조(위원회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생활안전, 교통,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(제2조 관련)

가.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

자치경찰사무	범위 기준	구체적 사항 및 범위
1) 생활안전을	가) 지역 주민 안전을	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
   위한 순찰 및 시	위한 범죄예방 시설	예방환경설계(CPTED) 사업 추진
설의 운영	설치·운영	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
	나) 지역 주민 안전을	① 지역·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
	위한 범죄예방진단	점검·관리
		②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
		단 전담 경찰관 운영
	다) 지역 주민 안전을	① 시기·장소별 범죄예방활동 시행·관리
	위한 순찰과 범죄예방	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시행
	활동 시행·관리	
2) 주민참여 방	가) 범죄예방을 위한 주	① 생활안전협의회, 자율방범대 등 범죄
범활동의 지원	민 참여 지역협의체	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협의체와의
및 지도	구성·운영	협업 및 지원·지도
	나) 주민 참여형 범죄예	①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 요령 등 홍보활동
	방활동 시행·관리	②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
3) 안전사고 및	가) 재난이 발생할 우려	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
재해·재난 시 긴	가 현저하거나 재난이	사고 및 재해·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
급구조지원	발생한 경우 주민의	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
	생명·신체 및 재산을	
	보호하기 위한 긴급구	
	조지원	
	나) 재해 발생 시 지역	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
	의 사회질서 유지 및	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
	교통관리 등	
	다) 그 밖에 긴급구조지	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
	원기관으로서의 긴급	내 긴급구조지원 활동
	구조지원 활동 등	

4) 아동·청소년 ·	가) 아동·노인·장애인	① 아동·노인·장애인 학대 예방활동
노인·여성·장애	학대 예방과 피해 아	② 아동·노인·장애인 학대 사안대응
인 등 사회적	동·노인·장애인에 대한	③ 아동·노인·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
보호가 필요한	보호활동	관 등 연계·지원
사람에 대한 보		④ 아동·노인·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
호 업무 및 가		전담 경찰관 운영
정·학교·성폭력	나) 아동·청소년·노인·	① 실종 사전예방활동
등의 예방	여성·장애인 등 사회	② 실종·유괴 경보 체계 구축·운영
	적 보호가 필요한 사	③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·
	람의 실종 예방·대응	감독
	활동	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
		운영
	다) 아동 대상 범죄예	①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안전보호 인력
	방 및 아동안전 보호	운영 및 선발·배치·감독
	활동	② 아동안전지킴이집 등 아동안전 보호기
		관 관리 및 운영·교육·홍보
		③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
		호활동
	라) 청소년 비행방지	① 청소년 비행 사전방지 활동
	등 선도·보호 활동	② 청소년 선도·보호활동 및 청소년 참여
		제도 운영
	마) 가정폭력범죄 예방	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
	과 피해자 등 보호	②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, (긴급)
	활동	임시조치
		③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·지원
		④ 가정폭력 관련 학대예방 전담 경찰관 운영
	바) 학교폭력의 근절·	① 학교폭력 범죄근절 및 예방활동
	예방과 가해학생 선도	②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
	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	③ 학교폭력 예방 전담 경찰관 운영
	사) 성폭력 예방과 성	①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
	폭력 피해자 등 보	활동
	호 활동	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

	아) 그 밖에 관련 법령	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
	에 경찰의 사무로 규	정된 아동·청소년·노인·여성·장애인 등
	정된 아동·청소년·노	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
	인·여성·장애인 등 사	및 가정폭력·학교폭력·성폭력 등 예방업
	회적 보호가 필요한	무
	사람에 대한 보호 및	
	가정폭력·학교폭력·성	
	폭력 등 예방 업무	
5) 주민의 일상	가) 경범죄 위반행위	①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
생활과 관련된	지도·단속 등 공공질	② 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 홍보
사회질서의 유	서 유지	
지 및 그 위반	나) 공공질서에 반하는	① 풍속영업의 지도·단속
행위의 지도·단	풍속·성매매사범 및	② 성매매 단속
   속 (다만, 지방	사행행위 지도·단속	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
   자치단체 등 다		④ 사행행위 지도·단속
   른 행정청의 사	다) 그 밖에 관련 법령	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
무는 제외한다)	에 경찰의 사무로 규	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
	정된 주민의 일상생활	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·단속
	과 관련된 사회질서의	업무
	유지 및 그 위반행위	
	의 지도·단속 업무	
6) 그 밖에 지역	가) 지역주민의 생활안	① 가정폭력, 학교폭력, 아동학대, 실종 등
주민의 생활안	전 관련 112신고(일반	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
전에 관한 사무	신고를 포함한다) 처	② 풍속영업, 그 밖의 경범, 주취자 등 지역
	리	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
		③ 분실습득, 보호조치, 상담문의 등 주민
		생활 관련 신고 처리
	나) 지하철, 내수면 등	① 지하철경찰대 설치·운영(수사 제외)
	일반적인 출동이 어려	② 내수면경찰대 설치·운영
	운 특정 지역에서 주	③ 관광경찰대 설치·운영
	민의 생명·신체·재산의	
	보호를 위한 경찰대	
	운영	

다) 유실물 보관·반환·	① 유실물 관련 보관·반환·매각·국고귀속
매각·국고귀속 등 유	등 처리업무
실물 관리	②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
라) 「경찰관 직무집행	① 응급구호대상자 관련 보호조치
법」 제4조에 따른 응	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·흉기 임시영치
급구호대상자에 대한	②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
보호조치 및 유관기관	③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
협력	조치
마) 그 밖에 관련 법령	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
에 경찰의 사무로 규	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
정된 지역주민의 생활	
안전에 관한 사무	

### 나.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

자치경찰사무	사무의 범위 기준	구체적 내용
1) 교통법규 위	가) 교통법규 위반 지	① 교통법규 위반 단속
반에 대한 지도.	도·단속, 공익신고 처	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
단속	리 등	
	나) 음주단속 장비 등	① 음주단속장비 구매·보급·관리
	교통경찰용 장비 보	② 교통단속장비 구매·보급·관리
	급·관리·운영 등	
2) 교통안전시설	가) 교통사고 예방, 교	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설치·
및 무인 교통단	통소통을 위한 교통	관리·운영
속용 장비의 심	안전시설 설치·관리·	②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
의·설치·관리	운영	단 설치 단속
		③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
		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
		조치
	나) 도로교통 규제 관	①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·
	런 지역 교통안전시	운영
	설심의위원회 설치	② 도로교통 규제 및 교통안전 시설 심의·
	및 운영	결정

	다) 무인 교통단속용	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·설치·관
	장비의 심의·설치·관	
	리·운영	
3) 교통안전에	가) 교통안전에 대한	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
대한 교육 및 홍보		
	나) 교통안전에 대한	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
	홍보	
4) 주민참여 지역	가) 교통활동 지원 협	① 모범운전자회·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
교통활동의 지원	력단체에 대한 운영·	동 지원 협력단체 구성·관리
및 지도	관리	
	나) 주민참여형 교통안	① 주민참여형 교통안전 활동 선발·관리
	전활동 지원 및 지도	등 지원
		② 주민참여형 교통안전 활동 활성화를 위
		한 홍보·안내
5) 통행 허가,	가) 차마의 안전기준	① 안전기준 초과승차, 안전기준 초과적재
어린이 통학버스	초과 승차, 안전기준	및 차로폭 초과차 통행허가 처리
의 신고, 긴급자	초과적재 및 차로폭	
동차의 지정 신	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	
청 등 각종 허가	나) 도로공사 신고접수,	① 도로공사 신고접수 및 도로점용허가 관
및 신고에 관한	현장점검 및 지도·감	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
사무	독 등	요 조치
	다) 어린이통학버스 관	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·접수 관리 및 안
	련 신고접수·관리 및	전점검
	관계 기관 합동 점검	
	라) 긴급자동차의 지정	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·관리
	신청·관리	
	마) 버스전용차로 통행	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·관리
	지정신청 처리	
	바) 주·정차 위반차량	①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신청·관리
	견인대행법인등 지정	
6) 그 밖에 지역	가) 지역주민의 교통안	① 교통사고 신고처리
내의 교통안전	전 관련 112신고(일반	② 교통안전 및 소통 관련 신고처리
및 소통에 관한	신고를 포함한다) 처리	

사무	나) 운전면허 관련 민원	① 운전면허 발급·재발급·갱신 신청·접수·
	업무	교부
		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·접수
		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
		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
		⑤ 그 밖에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
	다) 지역교통정보센터	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
	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	② 교통정보 연계 업무
	라) 정체 해소 등 소통	①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
	및 안전 확보를 위한	교통관리
	교통관리	② 안전사고·재해·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
		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
		③ 그 밖에 도로통제 등으로 교통정체
		우려시 관련 기관의 사전대책 협의
	마) 지역 내 교통안전	① 지역내 교통안전대책 수립·시행
	대책 수립·시행	② 지역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
	바) 교통안전 관련 기관	① 도로법, 교통안전법 등 교통관련 법령상
	협의 등	유관기관 협의
		②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
		관한 사무

#### 다.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

자치경찰사무	사무의 범위 기준	구체적 내용
	가. 지역 내 다중운집	①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안전
	행사 등의 교통질서	대책 협의 및 교통관리 지원
	확보 및 교통안전 관	② 행사장 주변 교통안전활동 지원
_	리 지원	
	나. 지역 내 다중운집	① 다중운집 행사 안전대책 협의 및
	행사 안전 관리 지원	행사장 안전관리·안전활동 지원

비고 1: 위 표의 나목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중「도로교통법」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한다.

비고 2 : 위 표의 가목 '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' 중 '지역 내 주민'은 '지역 내에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'으로 본다.